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154
------------	------

제출년월일 : 2007.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교육과 취업을 위한 우리 지역 인구 감소와 인재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천시장학회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단의 설립목적, 정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내지 제3조)
- 나. 재단은 제천권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함(안 제4조)
- 다. 재산은 제천시의 출연금,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함
(안 제5조)
- 라.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내지 제9조)
- 마. 시장은 재단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함(안 제11조)

사. 『제천시장학회육성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부칙 제2조)

3. 관계법령 : 붙임

4. 의안전문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첨 부 1. 입법예고문 사본 1부

2. 제천시장학회 운영현황 1부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 의욕과 애향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을 위해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 ①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재단은 제천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재단의 정관은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구성) ①재단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 및 자격 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제천권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2. 장학금 지원사업
3. 우수교사 지원사업
4.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
5.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천시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 재산
4. 기타 수입금

제6조(출연금)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제천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천시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요구 및 검사)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제천시 조례 제616호 2003. 12. 19)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발생된 잉여금은 이 조례로 설립된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관련 법규(발췌)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제도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교육양성교육을 받는 자 및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에게 학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와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특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등) ①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5>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종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 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이하 "관할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 (설립허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1.1.31>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관할교육감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31>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관할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4.11.6>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감독을 관할교육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제10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생략:서식5>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후,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4.11.6>

부칙 <제757호, 1999.11.2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법인설립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교육감에게 법인설립허가·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각각 제3조·제6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 2001.1.31>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조,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본문,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 및 제12조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⑨내지 <41>생략

부칙 <제847호, 2004.1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공고 제2007 - 690호

제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1일

제 천 시 장

제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육과 취업을 위한 우리지역 인구 감소와 인재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천시장학회의 확대 운영에 필요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제천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목적, 정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재단은 제천권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함(안 제4조)

다. 재산은 제천시의 출연금,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함
(안 제5조)

- 라.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내지 제9조)
- 마. 시장은 재단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
- 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함(안 제11조)
- 사. 「제천시장학회육성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나 개인은 2007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참조 : 평생학습팀장 ☎ 641-5732, FAX 641-57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 제천시청 주소 : 제천시 시청길 15(천남동 12-2) ※우 390-701

제천시장학회 운영현황(2007. 5월 31일현재)

□ 자산현황

구 분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비 고
계	3,039,615,853원	2,100,000,000원	939,615,853원	
현 금	2,928,306,036원	2,100,000,000원	828,306,036원	
부동산(토지91.142㎡)	108,459,817원	-	108,459,817원	m당 공시지가 1,190,000원
주 택 채 권	2,850,000원	-	2,850,000원	조총 은행 보호예수

□ 2007년 수입 및 지출내역(2007. 5. 31현재)

○ 수 입 : 630,186,536원

합 계(원)	06년이월액	이자수입	기 타	기 타
630,186,536	37,491,483	78,858,013 (기본재산 수입)	505,080,000 (출연금)	8,757,040 (법인세환급금)

○ 지 출 : 551,880,500원

합 계(원)	장 학 금	회 의 비	일반운영비	기 타
551,880,500	50,350,000	748,000	782,500	500,000,000 (정기예금)

○ 잔 액 : 78,306,036원

□ 2007년 장학생 선발 및 상반기 장학금 지급

구 分	선발인원(명)	상반기 지급액(천원)	비고
고등학생	29	11,600	
대 학 生	30	22,500	
특별장학생	18	12,750	1명 휴학 미지급
장학퀴즈	3	3,500	
합 계	80	50,350	